시 정 질 문 서

【오세완 의원】

- 1. 지하수 수용가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대부분임.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를 전과 같이 고지서 1매에 통합하여 부과, 고지 할 의향은? 또한 체납액에 대한 시의 특별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기 바람.
- 2. 부천시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 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나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?
- 3.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독촉장만 발송하고 과태로를 부과하지 않는 현 상활에서 청소를 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의향은? 그리고, 현재 구청별 정화조 청소대상 가구소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.